

IV. RBC 제도의 도입 방안

1. RBC 제도 도입의 기본 방향

가. 보험사 재무건전성과 시장의 감시능력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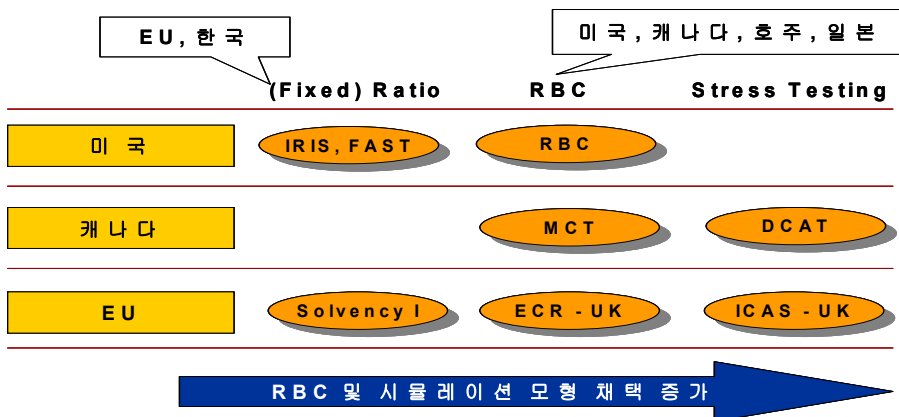
첫째, RBC 제도의 도입은 무엇보다 재무건전성의 제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RBC 제도는 보험사에게 리스크를 줄이거나 자본을 증대시키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반대로 규제 변화를 이용한 일탈 행위(regulatory arbitrage)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이는 모형 설계 초기의 원칙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RBC 모형은 투자자산의 특성별, 산출 종목별 리스크 프로파일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리스크 계수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변화와 차이를 이용한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RBC 제도의 도입이 다른 금융산업, 다른 나라 간에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다른 금융시장에 비해 보험시장을 더 불리하게 하여 공정경쟁이 저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런 점에서 금융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경제적 자본의 개념과 산출 방법론에 기초한 RBC 모형의 설계와 도입이 중요하다.

둘째,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파산 등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RBC 제도의 또 다른 목적이다. 따라서 RBC 제도는 감독당국과 시장의 모니터링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RBC 제도는 그 자체가 조기경보나 부실예측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만큼 보험사의 보험료, 준비금, 기타 재무상태 관련 변수에 대한 감독당국의 다른 모니터링 제도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체 재무건전성 규제 체계 안에서 RBC 제도가 RAAS 등 다른 제도들과 함께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⁶⁸⁾.

68) 유병순(2002), pp.97-98. 참조. 부실 보험사를 식별해내는 데에 기존의 재무비율

셋째, 앞에서 언급했지만, RBC 제도는 재무건전성 규제의 세계 추세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미국 이외에 캐나다, 일본, 호주, 그리고 Solvency I 을 시행하고 있는 유럽의 독일, 영국 등도 RBC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그림 IV-1> 참조). 또한 RBC 등을 포함하는 최소자본요건, 감독당국의 건전성 감독과 공시 강화를 통한 시장규율 촉진이라는 삼각체계(3 pillars)가 제시되고 있으며(<그림 IV-2> 참조)⁶⁹⁾, 경제적 자본의 개념, 신용평가체계와 회계기준을 그 기초 인프라로 요구하고 있다.

<그림 IV-1> RBC 관련 지급능력제도의 국제적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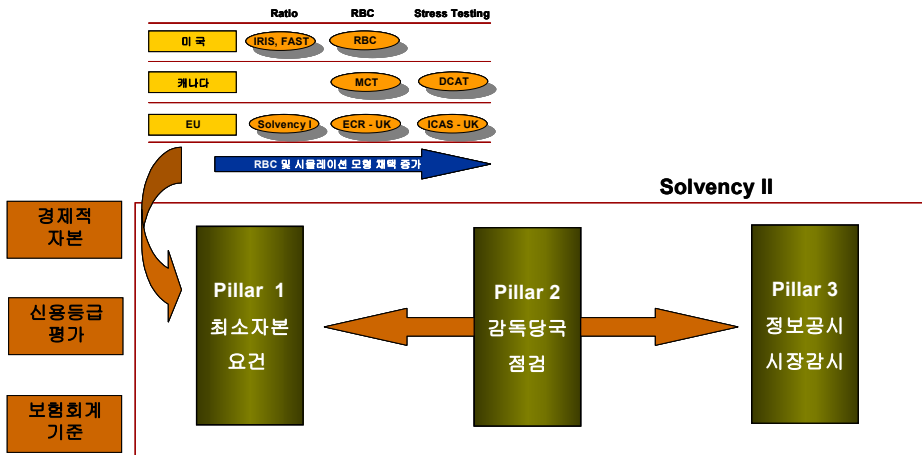
- 주: 1) IRIS, FAST는 미국 NAIC의 재무비율분석시스템을 지칭
- 2) MCT; Minimum Capital Test, DCAT; Dynamic Capital Adequacy Testing
- 3) ECR; Enhanced Capital Requirements, ICAS; Individual Capital Adequacy Standards

자료: Guy Carpenter(2004).

분석 시스템보다도 RBC 제도가 오히려 뒤쳐진다는 지적도 있다. Cummins 등 (1999).

69) 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에서도 EU식 지급능력제도의 RBC 전환 검토와 더불어 보험권의 Basel II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2004b).

<그림 IV-2> RBC제도와 Solvency II



이러한 국제적 추세는 각각 다른 리스크 특성을 가진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자본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 금융기관의 리스크 평가와 보유 자본량을 왜곡한다는 인식에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개별 금융기관별로 자체적인 내부 모형을 가지고 자사의 리스크 특성에 대응할 필요 자본량을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산출된 자본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확인해 줄 제3자로서 감독당국과 시장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내 금융감독당국에서도 RBC 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⁷⁰⁾.

나. 단계적 추진

RBC 제도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보험사 재무건전성에 대한 감독당국과 시장의 감시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그러면서도 국

70) 금융감독원은 RBC 제도는 현행보다 강화되는 요구 자본량 산출, 선진 감독방향 반영, 업계 수용가능성 및 리스크관리수준을 고려한 단계적 추진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2004), p.10

제적 재무건전성 규제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프라의 축적이 병행되어야 한다. RBC 제도의 도입은 그 기대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표IV-1> 참조) RBC 모형 자체의 설계에 따른 제반 이슈들 외에도 RBC 운영과 맞물려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규제 체계와 관련된 이슈들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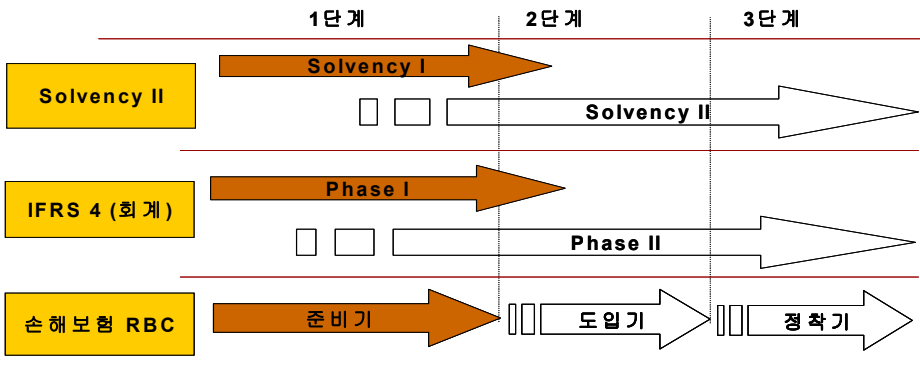
<표 IV-1> RBC 제도의 도입 효과와 한계

	미국의 RBC 제도의 사례
효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성공적 도입은 광범위하고도 공개적인 RBC 기준 개발 과정에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 개발 과정을 통하여 RBC 공식의 결함 등에 대한 공개 토론과 소비자단체의 의견 수렴 - 초기 자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정계수 적용 - 건전성 순위 배제하여 경쟁적 이해관계 배제 ↔ 신용평가회사와 반대 현상 2. 보험시장 전반적으로 자본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보험 부실 보험회사 수의 감소 16개사('76~'85) → 42개사 ('86~'93) → 17개사('94~'00) 3. 리스크에 대한 인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BC를 계기로 VaR, DFA 기법의 사용 보편화
제약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리스크를 다루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화에 따른 상충문제, 보험사의 자산 가치 과대 측정, 정책적 고려 가능성 등이 존재 2. 리스크 분류 및 계수 산출 등에서 자의성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보험, 부외거래 등은 감독당국의 판단에 따라 선정 - 공분산 가정의 비현실성 - 상관관계 고려 미흡 3. 일률적 적용(one size fits all) 4. 회계상 가치에 따라 산출 자본의 가치가 좌우됨

자료: 유병순(2002), pp.94-98, Barth(2002).

RBC 제도가 본래 목적을 충실히 구현하되 도입의 효과와 운영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전면적 도입보다는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BC 제도 도입에 대하여 준비기, 도입과 조정기, 마지막으로 전체 재무건전성 체계 내에서의 RBC 제도 정착기로 이어지는 3단계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그림 IV-3> 참조).

<그림 IV-3> RBC제도의 단계별 도입



제1단계는 현행 지급여력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대안으로서의 RBC 모형을 설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감독당국의 2007년 도입 일정을 감안하면, 2006년까지 데이터 정비 등 기초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시기다. 다음으로 제2단계 도입기는 RBC 제도를 시행하되 EU식 지급여력제도와 병행하면서 제반 인프라를 보완하는 시기다. 특히 이 시기에는 Solvency II의 구체적인 시행안은 물론 책임준비금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2단계 작업의 세부 윤곽이 드러날 시기라고 판단되므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중간 단계의 보완 장치들이 마련되고, RBC 모형도 인프라의 정비를 통하여 보다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제3단계 정착기는 RBC 제도를 전체 재무건전성 규제 체계 내에서 조정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리스크관리 수준, 보험회계 기준, 지급능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틀이 제시되는 시기로 보아야 하며, Basel II나 Solvency II에서 제시된 내부모형에 의한 자기자본관리와 감독당국의 자기자본규제 간에 일정한 틀이 제시될 시기이기도 한다.

2. 도입 단계별 이슈

가. 제1단계 - 가용자본과 지급여력제도 개선

제1단계는 현행 EU식 지급여력제도를 유지하면서 그 문제점을 보완하고, RBC 모형을 설계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개선이 용이한 가용자본에 대한 개선이 우선적으로 제안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금융기관의 기본자본 이외에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보완자본의 범위가 축소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EU식 지급여력제도는 2003년 개정을 거치면서 2004년부터 'Solvency I'이라는 이름으로 EU 전역에 적용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특징들로서 손해보험 규모에 따라 리스크 계수를 차별화하고⁷¹⁾ 있으며, 일부 손해보험종목(해상, 일반배상책임)의 최소보증기금(minimum guaranty fund)의 50% 증액, 그리고 리스크 전가나 헷지 목적이 아닌 출재 재보험의 인정 한도를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지급여력제도에 대한 몇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2005년 4월부터 후순위채의 인정 범위가 현재의 '납입자본금 범위 내에서 감독규정상 자기자본의 50% 내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가용자본의 범위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험사 자기자본의 기초자본과 보완자본 항목들의 재조정을 통해서 지급여력제도를 재정비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른 한편으로는 리스크총량을 측정하는 지급여력기준금액 또는 리스크자본에 대한 측정방식의 개선이다. 이 부분은 본 연구의 제II장과 제III장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했던 부분이다.

71) 보험료 기준으로 5,000만 유로 이하는 18%, 초과하면 16%. 보험금 기준의 경우 3,500만 유로 이하는 26%, 초과는 23% 계수를 적용한다.

따라서 제1단계에서는 지급여력비율 또는 RBC 비율의 분자와 분모에 해당하는 가용자본 인정에 대한 재정비와 새로운 리스크 측정 방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가용자본에 대해서는 그동안 포괄적으로 인정된 부분들에 대한 축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는 국제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용자본은 분모의 리스크 자본이라는 대칭적 개념과 함께 균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이번 연구를 포함한 대다수 연구 결과에서 RBC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행 기준보다 리스크 총량이 증가하여 그에 상응하는 요구 자본량이 커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크다”, “작다”라는 개념은 실무적 수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다루어야 할 이슈이고, 그보다 먼저 다루어야 할 이슈는 리스크를 적정하게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용자본과 마찬가지로 RBC 측정에서도 재무건전성의 강·약을 올바르게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재무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목적의식이 오히려 재무건전성의 일방적 “강화”에만 맞춰지다 보면, RBC가 현행 지급여력기준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가용자본은 줄고 요구 자본량 RBC는 높아지는 방향으로만 제도가 운영될 경우 보험사는 RBC 제도를 큰 부담으로 받아들일게 되고, 제도에 대한 반발도 커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보험사가 처한 리스크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여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리스크 자본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분류와 평가기간, 허용한도 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략적인 리스크 분류와 리스크 기간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의 모범규준에서도 제시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여러 리스크기간과 리스크 허용한도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⁷²⁾.

또 하나의 이슈는 데이터라는 기초 인프라의 구축이다⁷³⁾. 분명한 것

72) 영국의 리스크자본(ECR) 산출에서는 1년과 5년의 리스크 기간과 1/40, 1/100, 1/200, 1/500의 4가지 부도확률을 제시하고 있다. Watson Wyatt(2003).

은 기초 인프라, 특히 데이터 집적은 RBC 제도가 정착기에 들어가기까지 제1단계와 제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다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취약한 신용리스크 분야의 데이터 집적은 물론 각 리스크별 대분류에서 소분류로 내려갈수록 데이터 집적 정도에 따른 RBC 모형의 안정성이 좌우될 것이므로 데이터의 하부 분류에도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모형이 정교해질수록 리스크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와 분류, 그리고 보다 많은 데이터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나. 제2단계 - 리스크자본과 적기시정조치 개선

RBC 모형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등 기초 인프라의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RBC 제도의 도입이 가능한 시기를 본 연구에서는 제2단계로 명명하고 있다. 시기상으로는 2007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 시기는 외부적으로 은행권의 Basel II가 시행되고, 유럽의 Solvency II나 국제보험회계기준(phase II)의 구체적인 윤곽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제적 추세를 적절하게 반영하면서 내부 체제를 정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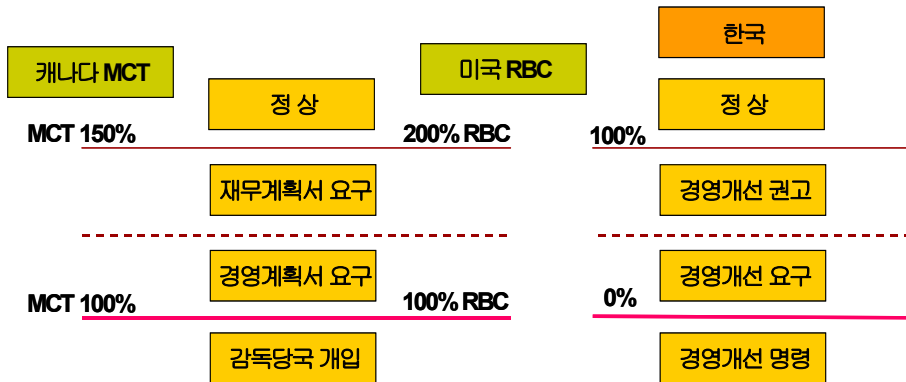
향후 재무건전성 규제 체계가 RAAS 중심으로 재편된다면, 제2단계는 현재의 지급능력제도 중심의 CAMEL식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방식이 RAAS 중심으로 재편되고, 여기에 RBC 모형이 결합되는 단계이다. 이 경우 감독당국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EU식 지급여력기준금액을 하한으로 하는 자본요건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다가 점차 RBC가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2단계에서는 RBC 모형의 정태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캐나

73) 금융감독원은 2006년부터 리스크평가제도(RAAS)를 통해서 보험사의 리스크 노출 정도를 평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RBC를 도입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BC와 RAAS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2004b) 참조.

다의 DCAT(Dynamic Capital Adequacy Test)나 영국의 ICAS(Individual Capital Assessment)와 같은 시나리오 방식의 건전성 평가제도의 도입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IV-4> 손해보험사 RBC와 적기시정조치



제2단계에서 RBC 제도로 전환될 경우 감독당국의 개입수준은 <그림 IV-4>의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가 국내 손해보험 RBC 제도 도입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⁷⁴⁾. 다만, 당시 여건을 고려하여 EU식 지급여력기준금액 및 지급여력비율과 비교하여 미국 사례처럼 리스크 자본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두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74) 미국의 RBC 모형에서, RBC 비율 (= 가용자본 / [리스크 자본 * 0.5])의 분모의 조정계수(0.5)는 감독당국이 부실보험사에 조기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각시키기 위해 들어간 계수라고 언급되기도 한다. 즉 단계별 제재조치의 기준이 되는 감독당국 통제수준의 RBC비율을 100%로 만들기 위해 분모에 조정계수(0.5)가 곱해진 것이라는 것이다. 유병순(2002), p.89.

다. 3단계 - RAAS와 RBC 제도의 조화

제3단계는 2009년을 전후하여 공정가치회계의 등장으로 자산과 부채의 평가기준이 일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3단계는 RBC 모형의 세 가지 측정 요소들 중에서 지금까지 논의로 하였던 대상 자산과 부채의 가치 평가에 대한 인프라도 모두 갖춰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경영실태평가(CAMEL)제도가 수익성과 자본적정성 평가 등 재무성과 모니터링과 보험사 내부 정보인 경영관리까지 모니터링을 포괄하는 RAAS 체계로 전환하면서 RBC 제도는 그 틀 내에서 다른 규제 수단들과 상호 보완,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그림 IV-5> 참조).

<그림 IV-5> RAAS 체제와 RBC

